



아동학대 현실과 정책적 대응

축사

Congratulatory
Address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크고 작은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우리지역의 아동학대 현실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인간과 인공지능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고도의 문명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원시적인 아동학대가 자행되고 있으며 더구나 아동학대 중 80% 이상이 부모에 의한 학대가 잇따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아동학대 발생률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서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은 낮은데다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도 아직은 미흡한 실정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사회의 일부 어른들이 아직도 전근대적인 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동들에 대한 학대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동은 우리 지역사회와 국가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인공이라는 점에서 더욱 소중히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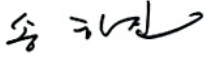
아무쪼록 각계 전문가 여러분의 주제 발표와 심도있는 토론이 이뤄지는 오늘의 포럼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정확한 실태분석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이 마련 되길 바랍니다.

나아가 피해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과 아울러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전략적 방안이 논의되어 봄꽃처럼 화사한 아이들의 미소가 번져 나가는 전라북도가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강현직전북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포럼에 참석해 주신 각계 전문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북연구원의 무궁한 발전과 더불어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24일

전라북도지사 

목 차

Contents

- 09 | 주제발표
아동학대 현실과 정책적 대응
신영화 |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37 | 지정토론 01
국주영은 | 전북도의원
- 41 | 지정토론 02
김광혁 |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45 | 지정토론 03
김완진 |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 53 | 지정토론 04
임광묵 | 전남중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 59 | 지정토론 05
황경완 |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 과장

2016년 제1차 전북여성정책포럼

아동학대 현실과 정책적 대응

일 시 : 2016. 3. 24(목). 14:00~16:00

장 소 : 전북도청 2층 도서관 세미나실

공동주관 : 전라북도 /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사회 | **조경옥**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연구위원

13:30-14:00	등록	
14:00-14:10	축사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개회사	이지영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소장
		좌장 이흥래 전주 MBC 국장
14:10-14:40	주제발표	아동학대 현실과 정책적 대응 신영화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4:40~15:40	지정토론	국주영은 전북도의원 김광혁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완진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임광목 전남중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황경완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 과장
15:40~16:00	종합 토론 및 폐회	

*가나다 순



주제발표

아동학대 현실과 정책적 대응

신영화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아동학대의 현실과 정책적 대응

신 영화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제목 차례

-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II. 아동학대의 이해
- III. 아동학대의 현실
- IV . 아동학대에 대한 정책적 대응
- V. 결론 및 제언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예방사업 법적 기반 마련
- 2001년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개소
(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2014년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 2016년 현재 16개 시도 56개 아동보호전문기관
- 신고전화: 112 (24시간 접수)
(미국, 1974년 the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제정)

- 아동학대처벌 특례법의 의의 :
 - 가정 내 훈육 -> 중대한 범죄
 - 국가와 지자체의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 개입
- 주요 내용 :
 - ✓ 친권제한 및 상실
 -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권한과
경찰관 현장동행
 - ✓ 신고의무강화 및 확대
 - ✓ 응급 보호조치제도
 - ✓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 ✓ 신고전화 112 지정

- 아동학대의 영향:
 - 아동학대증후군(the Battered Child Syndrome)
 - 아동, 청소년기의 발달문제뿐만 아니라, 성인기 부모역할, 대인관계, 직업생활 등 정신건강 및 사회적 기능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이은주, 2004 재인용)

- 피해아동, 가해자 및 가족에 대한 다양한 개입에도 불구하고 재발생율이 높음.
-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의 중복발생
- 아동학대의 세대간 전승
- 아동보호의 제도적 접근/ 사회적 연대감 향상 요구
- 아동학대 중단과 상처의 치유, 그리고 아동발달 지원이 가능한 가족기능 향상, 아동보호를 지원하는 사회적 체계의 다중적 정책방안 필요.

- 연구목적

아동학대의 현황과 아동학대처벌 특례법 시행 이후의 변화를 분석하고, 외국의 아동보호체계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함.

II. 아동학대의 이해

1.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함(아동복지법 제 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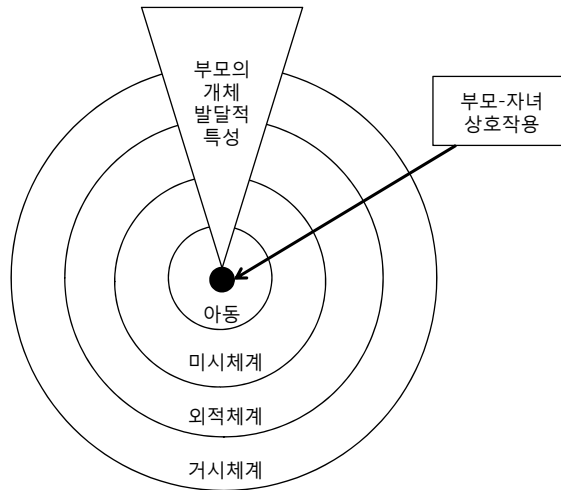
2. 아동학대에 대한 관점

1) 아동학대의 초기모델

- 정신역동 모델; 개인(가해자, 피해아동) 또는
가해자-피해자 양자관계(상호작용)
- 사회학적 모델; 학대위험에 영향을 주는 외부의 사회
경제적 요인(실업, 열악한 주거와 서비스 환경)

2) 생태학적 관점

- 복잡하고 다양한 아동학대 영향요인을 포괄하는
모델 multimodal approach에 대한 요구
(Milner & Chilamkurti, 1991; 박명숙, 2000 재인용)
- 아동학대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 문화 영역에서
의 많은 요인들에 의하여 결정되고 요인들은 생
태학적으로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함.
(김광혁, 김정석, 2012 전라북도 사례연구)



<그림1> 아동학대와 생태학적 모델(Sidebotham, 2001; 김세원, 2008, p.10 재인용)

- 개체의 발달적(ontogenic development) 특성:
특정 부모가 어떻게 학대 혹은 방임적 방식으로 행동하게 되는지 설명,
부모 자신이 아동기에 학대 받은 경험이 있는 지와 학대에 대한 부모의 지각과 반응의 특성을 포괄.
- 가해자의 알코올 및 약물문제, 정신건강, 낮은 연령

- 미시체계(microsystem):
아동이 속한 직접적인 가족 세팅, 아동의 건강, 행동, 기질 및 장애, 부부관계와 가정폭력, 부모의 양육태도 등이 해당
- 외적체계(exosystem):
가족이 속한 더 큰 사회체계,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보다는 사회적 네트워크와 지역사회를 통해 아동과 가족에게 영향을 미침.

- 거시체계(macrosystem):
특정 사회의 문화적 신념과 가치, 문화 또는 사회적 규범이 개인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아동학대의 잠재적 가능성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를 설명,
아동에 대한 태도
양육에 대한 태도
폭력에 대해 용인하는 태도 등

2. 아동학대의 영향과 중재요인

1) 아동학대의 영향

- 학대받은 아동의 행동문제 및 정신건강문제 (Collado & Levine, 2007; 신영화, 1986)
- 공격성과 대인불안(신혜영, 최혜림, 2003)
- 학습능력 저해(김미숙, 박명숙, 2004)
- 청소년기와 성인기 자살의도, 폭력비행 증가 (박재연, 2010; Lansford et al., 2007)
- 성인기 부모역할, 정신건강문제에 영향 (Collishaw et al., 2007; 이은주, 2004)

2) 중재요인

- Luthar & Zigler(1991)
- **아동의 성향/기질적 특성**(반응성, 독립, 지적 능력)
- **따뜻하고 안전한 가족관계**
- 가족 외부의 지지의 활용 가능성(또래, 교사)
- Collishaw et al.(2007)
- **돌봄에 대한 인식, 또래관계 및 성인기 애정관계의 질, 부모 이외의 지역사회지지**(교사, 이웃)

3. 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의 관점; 아동보호와 가족서비스

	아동보호	가족서비스
문제를 보는 시각 개입의 초점 국가와 부모의 관계 가정의 보호	개별적/도덕적 법률적/조사 중심 대립적/적대적 비자발적	사회적/심리적 치료적/욕구사정 중심 파트너 관계 자발적
대표적인 국가	영미권(미국, 캐나다, 영국) 신고제도 채택	노르딕 국가; 신고제도 채택 서유럽 국가; 신고제도 미채택

자료: 김은경, 김미희, 윤혜미(2015), p.5.

-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
신고주의에 기반, '아동보호' 중심
-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 '가족서비스' 지향
- 2014년 아동학대처벌 특례법: '아동보호'로 회귀
학대행위자의 가중처벌에 초점

III. 아동학대의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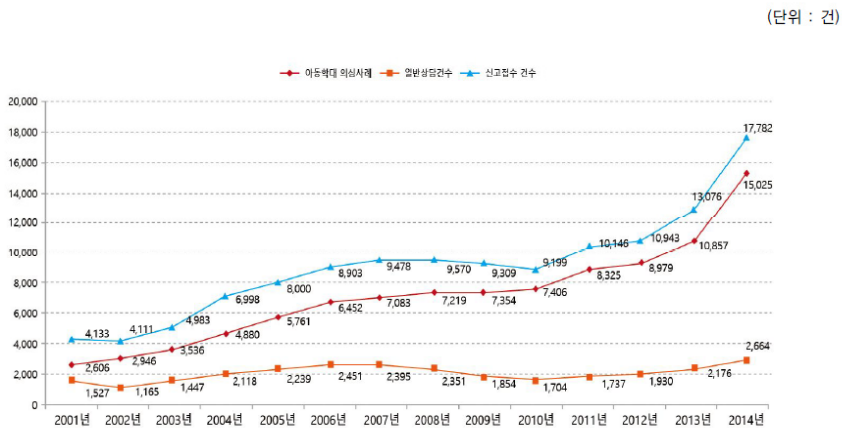
- 아동학대의 신고현황

- ✓ 아동학대 의심사례건수 신고 급증
- ✓ 2001년 2,606건 → 2010년 7,406건
2014년 15,025건(전년도 대비 3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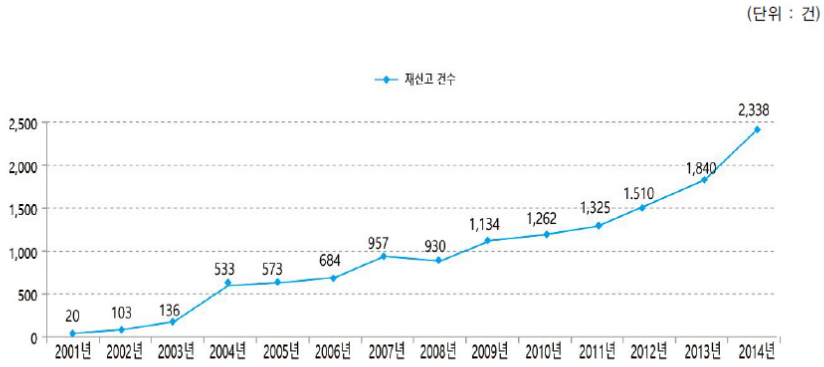
- ✓ 2014년 피해아동 발견율 1.10%(아동 1천명당)
전북지역 발견율 2.81%

- ✓ 2014년 학대 재발생율 10.2%(1,027건)

자료: 보건복지부, 중앙아동전문기관 (2015).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그림 7-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그림 7-2〉 연도별 재신고 사례 발생 건수

- 전북지역 아동학대 현황(2014)
- 아동학대의심사례 1,290건(총 신고건수 중 90%)

(건, %)

	아동학대의심사례		소계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	아동학대 의심사례	
전라북도	153(25.4)	387(64.3)	540(89.7)
전라북도 서부	97(16.1)	454(75.3)	551(91.4)
전라북도 동부	29(12.7)	170(74.2)	199(86.9)
소계	279(19.5)	1,011(70.5)	1,290(90.0)

전라북도 시군별 신고접수 건수

(단위: 건, %)

전북	전주시 완산구	56(2.2)	173(1.4)	229(1.5)
	전주시 덕진구	63(2.5)	133(1.1)	196(1.3)
	완주군	13(0.5)	39(0.3)	52(0.3)
	임실군	2(0.1)	16(0.1)	18(0.1)
	진안군	3(0.1)	8(0.1)	11(0.1)
	무주군	3(0.1)	1(0.0)	4(0.0)
	익산시	55(2.1)	241(1.9)	296(2.0)
	군산시	28(1.1)	138(1.1)	166(1.1)
	김제시	10(0.4)	37(0.3)	47(0.3)
	부안군	0(0.0)	16(0.1)	16(0.1)
	정읍시	15(0.6)	33(0.3)	48(0.3)
	고창군	3(0.1)	21(0.2)	24(0.2)
	남원시	24(0.9)	137(1.1)	161(1.1)
	순창군	1(0.0)	7(0.1)	8(0.1)
	장수군	2(0.1)	10(0.1)	12(0.1)
	소 계	278(10.8)	1,010(8.1)	1,288(8.6)

• 신고자 유형

➤ 신고의무자 신고율 29.0%, 비신고의무자 71%

✓ 신고의무자: 초, 중, 고교 직원 13.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7%,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8%, 보육교직원 1.8%

✓ 비신고의무자: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23.2%,
 경찰 14.7%, 부모 13.3%

-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 1건 당 2.0회 현장조사 진행

- ✓ 상담원 단독 현장조사 77.8%
 - ✓ 상담원/경찰 12.7%
 - ✓ 상담원/공무원 5.0%
 - ✓ 경찰 단독 3.2%
 - ✓ 상담원/경찰/공무원 1.1%

- 피해아동 인구사회학적 특성

- ✓ 아동의 성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음
 - ✓ 연령: 만 13~15세 23%, 고학년, 저학년 순
 - ✓ 가족유형: 친부모가족 44.5%
 - 부자가정 18.8%
 - 모자가정 14.1%,
 - 미혼부모가정 2.1%
 - ✓ 국민기초 비수급권자 64.9%, 수급권자 아동 23.3%

- 학대행위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 ✓ 성별: 남성 55.6%, 여성 44.3%
- ✓ 연령: 40대 43.3%, 30대 30.8%
- ✓ 지위: 부모 81.8%, 보육교직원 2.9%,
아동복지시설종사자 1.8%
- ✓ 직업유형: 무직 32.4%, 단순노무직 16.5%,
관리직, 기술공, 사무직 등 21.6%
- ✓ 국민기초 비수급권자 68.4%, 수급권자 18.5%
- ✓ 특성: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33.1%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20.4%
부부 및 가족 갈등 10.0%

- 아동학대사례 조치결과 <피해아동 초기조치>

- ✓ 원가정보호 73.4%
- ✓ 분리보호 26.4%
- ✓ 사망 16건(0.2%)

-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의 70% 원가정보호
- 성학대의 49.9% -> 원가정보호

<학대행위자 최종조치>

- 지속관찰 74.4%
- 고소,고발, 사건처리 15.0% ->
- 중복학대,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 순
- 학대행위자 만나지 못함 5.5%
- 아동과 분리 5.1%

- 성학대: 다수가 고소, 고발
- 성학대 외 유형: 지속관찰 70%

• 서비스 제공 현황

- ✓ 피해아동: 총 335,424회
상담서비스 약 49%, 일시보호 28%~32%
- ✓ 학대행위자: 총 73,817회
상담서비스 80% 이상
- ✓ 부모 또는 가족: 총 79160회
상담서비스 약 87%

- 재학대 사례
 - ✓ 피해아동의 성별, 연령, 가족유형에서 재학대 미발생 사례와 유사
 - ✓ 학대행위자의 성별, 연령 분포 유사
 - 직업유형: 무직 43.8%, 단순노무직 22.2%, 서비스 및 판매직 10.8%
 - 소득수준: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44.4%
 - 수급권자 54.9%, 비수급권 35.7%
 - 특성: 중독문제 8.3%

- 재학대 사례
 - ✓ 지위: 부모 87.2%, 친인척/대리양육자 4.7%
 - ✓ 발생장소: 가정 내 90.9%, 복지시설 2.5%
 - ✓ 발생빈도: 매일 36.4%, 1주일에 1번 13.7%, 2~3일에 1번 13.1%
 - ✓ 학대유형: 비율 분포 유사
 - ✓ 조치결과: 분리보호 비율이 높음
 - ✓ 가족유형: 부자가정, 모자가정, 미혼부모가정 비율이 더 높음

- 사망 사례

- ✓ 발생건수: 17건(14명)
- ✓ 피해아동 연령: 2세 미만이 8건
- ✓ 피해아동 성별: 여아 9건, 남아 8건
- ✓ 행위자 지위: 친부 6건, 친모 4건,
양부 2건, 양모 2건
- ✓ 발생빈도: 일회성 7건, 거의 매일 5건
- ✓ 고소/고발/사건처리 10건, 수사 중 7건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 ✓ 상담원 수: '14년 364명, '15년 503명
- ✓ 1인당 신고접수 사례 48.8건
- ✓ 현장조사 168.2회
- ✓ 피해아동, 행위자, 가족 대상 서비스 총 1341.6회
- ✓ 교육사업 38회, 홍보사업 30,917.8회, 협력사업 3.5회
- ✓ 1인당 담당 사례관리 총 66.5건
-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 ✓ 상근 47명, 프리랜서 137명
- ✓ 업무량: 1인당 총 245.4회

IV. 아동학대에 대한 정책적 대응

- 아동학대처벌 특례법의 성과(장화정, 2015;
허남순, 고윤순, 2015)
 - 신고접수 사례 증가
 - 경찰 동행 현장조사 비율 680% 증가
 - 아동보호격리조치 증가

 - ✓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인식 강화,
 - ✓ 유관기관의 공조체계 구축, 정보공유와 DB구축,
 - ✓ 법적 지원 강화, 학대행위자 치료명령 증가
 - ✓ 아동보호기관과 전문인력의 증가
-
- 아동학대처벌 특례법의 개선과제(장화정, 2015)
 - ✓ 유관기관 간 상호업무 이해 및 아동학대 민감성 증진
 - ✓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근거 법 규정) 마련
 - ✓ 아동학대 관련 인프라 확충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상담원 수 증원
 - 분리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 인프라(쉼터) 확충
 -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전담 경찰 배치
 - ✓ 아동복지법 내 학대행위자 상담/교육의 강제성 필요

<외국의 아동보호체계>

❖ 미국

- 1974년 연방정부 '아동학대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
- 1976년 주정부 '아동학대 신고법' 제정으로 아동보호체계 확립
- 1997년 개정된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에 의한 연방정부 행정체계 신설
- 2003년 '아동 및 가족의 안전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 방지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선과 아동학대 관련 정보 관리 기관의 임무 강화, 아동학대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 및 소추에 관한 프로그램 지원

- 연방정부 행정체계
- 아동청소년가족부(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의 아동국(Children's bureau) 산하에 아동학대와 방임 사무국(office of Child abuse and neglect) : 아동학대 업무 수행
- 전국 아동복지자원센터(National Child Welfare Resource Center) 운영/ 10개에 이르는 자원센터는 민간 위탁 운영: 가족중심 실천, 입법 및 사법적 이슈, 조직개선, 위탁보호 영구계획, 아동복지정보기술, 특수육구 아동입양, 청소년 서비스, 아동학대, 유기 아동지원, 지역사회에 기초한 가족자원지지 등 업무

- 전국정보센터(National Clearinghouse)의 민간 위탁 운영, 전국아동학대 및 방임 정보센터 (NCCAN)와 전국입양정보센터(NAC)로 구분, 연방정부의 전액 예산지원 운영 : 아동학대와 방임, 입양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전문가와 일반인에게 보급, 전문가 매뉴얼 작성
- 건강 및 인간서비스국(HHS) 내의 아동 및 가족부 (ACF): 아동 및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 관리, 조정/ 아동 및 가족부(ACF) 내에 아동 청소년 및 가족부(ACYF)에서 아동보호정책을 추진하며 그 산하에 있는 아동국(Children's Bureau)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 지원

- 주정부의 아동보호 행정체계
(미국은 주마다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
- 24시간 긴급전화 운영, 신고접수 전담인력 배치, 응급사례경우에 24시간 이내에 현장조사 실시, 30일 이내에 학대여부를 조사하여 판정
- 부모로부터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 분리조치, 부모는 24시간 이내에 법원 방문
- 아동은 위탁가정/비영리기관에서 보호
- 가족전체가 지원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제공 실시
- 모든 경우의 아동에게 지역사회 민간기관과 연계한 적응서비스 제공

- ❖ 일본(김혜영, 2014)
 - 2000년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의 정의와 관계자의 조기발견, 신고의무, '아동상담소'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
 - 2004년 개정: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및 예방 강조, 국가 및 지자체 책무 구체적 명시, '학대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신고범위 포함
아동복지사 증원, 심리사 배치, 가해부모 상담 강화
 - 2007년 개정: 아동학대 방지에 '아동권익 옹호'를 추가, '아동의 심각한 피해 사례분석'을 국가와 지자체 책무로 명시, 현장방문조사의 권한과 보호자에 대한 지도 권한 강화

- 중앙정부 행정체계
 - 후생노동성 > 고용균등 아동가정국 >
학대예방대책실: 아동학대 방지 시책의 기획입안에 관한 일, 아동학대예방 대책에 관한 각 부처 등과의 조정에 관한 일, 아동학대예방 대책의 조사 연구에 관한 일, 아동학대예방 대책에 대한 홍보 계발에 관한 일 등을 수행
- 지자체 행정체계
 - 각 지방 도도부현의 공립 아동상담소와 시정촌의 복지사무소 및 가정아동상담소를 중심으로

- 일본 아동보호서비스 내용
- 피학대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 심리치료 전담직원(비상근) 배치 확대
- 가족강화를 위한 보호자 지원: 가족 재통합을 아동보호서비스의 목표로 설정, 학대받은 아동의 시설 입소 전부터 퇴소 후까지 지속적이며 통합적으로 가족단위 사례를 관리하는 가족사회복지사를 아동복지시설에 배치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으로 가족지원체제 긴급정비 촉진사업, 아동학대 연계 대응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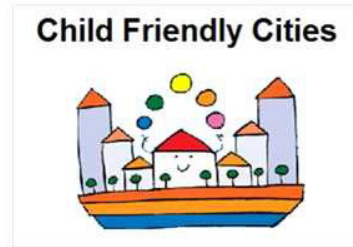
V. 결론 및 제언

❖ 아동학대 보호체계 개선방향

- 법원과 경찰조직의 아동학대 민감성 수준 향상
- 아동학대 행위자와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치료적 개입 강화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양적 확대와 상담원 수 확대로 선진국 수준의 서비스 제공
- 아동학대 예방 강화와 조기발견체계 구축
- 지자체의 책무 강화: 아동학대 방지사업 및 가족지원사업 확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아동복지 예산 확대

❖ 제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Child Friendly Cities. CFC)

-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불평등과 차별 없이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4대 권리를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도시
-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니세프에서 정의함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심벌
자료: BWFDI brief, 2014.6.30

- 2013년 서울시 **성북구**가 유니세프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음
- 충주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조성업무협약 (2015.10.22)
- 광주시 남구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조례제정 (2015.10.24)
- 부산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례 제정 (2015.12.28)
- 대전시 유성구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협약 (2016.3.14)
- 군산시 어린이행복도시 표방, 2016년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

참고문헌

- 강미경 (2009). 아동학대 행위 중단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9, 29-72.
- 김광혁, 김정석 (2012). 가족빈곤 및 지역사회환경과 아동학대, 그리고 아동발달, **사회과학논총**, 28(1), 45-64.
- 김미숙, 박명숙 (2004). 아동의 학습능력 저해요인으로서의 학대경험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5(5), 29-40.
- 김세원 (2008). 아동학대 재발생의 영향 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유숙 (2003). 놀이를 활용한 이혼가족의 해결중심단기치료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1(2), 77-99.
- 김재엽, 이지현, 정윤경 (2007). 부부폭력가해자의 성장기아동학대경험이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 -부모역할만족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5, 291-312.
- 김혜영 (2014). 한, 미, 일 아동보호서비스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 **일본문화연구**, 52, 119-141.
- .
- .

- 김혜영, 석말숙 (2003). 아동기 학대적 경험이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개인특성 및 가족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6, 71-97.
- 박명숙 (2000). 아동학대문제에 대한 생태체계적 관점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리뷰**, 5(1), 95-111.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신영화 (1986). 한국 아동학대의 사회 인구 및 가정환경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영화 (2003). 가정폭력에 노출된 성인아이 성향 자녀의 가족에 대한 개입.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1(1), 127-153.
- 신혜섭 (2000). 아내구타가정 아동의 행동문제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16(1), 67-85.
- 신혜영, 최혜림 (2003).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과 공격성 및 대인불안간의 관계-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5(2), 한국심리학회, 295-307.

- 오정수, 이해원, 정익중, 이호균, (2006). 피학대아동의 권리보장과 공격적 친권개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1, 29-57.
- 김은경, 김미희, 윤희미 (2015). 성학대 피해아동 보호체계의 쟁점과 개선방안, **생활과학연구논총**, 19(2), 1-19.
- 이은주 (2004). 아동학대경험과 가정폭력.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공동 학술대회 자료집, 526-538.
- 이은주 (2015). 아동보호체계의 변화와 개선방안, **한국가족복지학**, 20(1), 69-85.
- 조미숙 (1999). 가정폭력 목격이 자녀의 심리 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4, 295-326.
- 장화정 (2015). 아동학대처벌법 및 개정 아동복지법 1주년 성과 및 개선과제, 2015 아동학대예방 포럼 자료집, 9-39.
- 정혜숙 (2011).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중복발생과 관련된 국내 사회복지 현장 실무자의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따로 또 같이-. **한국사회복지학**, 63(3), 83-108.
- 최선령 (2007). 아동기 학대피해 여성의 가족치료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5(1), 159-188.
- 허남순, 고윤순 (2015). 한국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을 위한 특례법 시행 이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정복지연구**, 37, 1-1.

- Collado, Carmen and Paul Levine (2007). Reducing Transfers of Children In Family Foster Care Through Onsite Mental Health Interventions, *Child Welfare*, 86(5) September/October, 133-150.
- Collishaw, Stephan, Andrew Pickles, Julie Messer, Michael Rutter, Christina Shearer, Barbara Maughan (2007). Resilience to adult psychopathology following childhood maltreatment: Evidence from a community sample, *Child Abuse & Neglect*, 31, 211-229.
- Edleson, J. L. (1999). Children's witnessing of adult domestic violence. *J. of Interpersonal Violence*, 14, 839-870.
- Faller Kathleen (1997). Child Abuse: A Form of Family Violence. 한국 아동복지학회 제8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150-194.
- May, Joanne C. (2005). Family Attachment Narrative therapy: Healing the experience of early childhood maltreatment. *J.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1(3), 221-237.
- Miller, B. J., Jose R. P. Cardona, M. Hardin (2006). The use of Narrative Therapy and internal family systems with survivors of childhood sexual abuse: examining issues related to loss and oppression. *J. of Faminst family Therapy*, 18(4), 1-27.

- Lansford, Jennifer E., Shari Miller-Johnson, Lisa J. Berlin, Kenneth A. Dodge, John E. Bates and Gregory S. Pettit (2007). Early Physical Abuse and Later Violent Delinquency: A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Child Maltreatment*, 12, 233-245.
- Parker, Alyson, Anne Fourt, Judith I. Langmuir, E. Jane Dalton, Catherine C. Classen (2007). The Experience of Trauma Recovery: A Qualitative Study of Participants in the Women Recovering from Abuse Program (WRAP),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16(2), 55-77.
- Sanders, M. R., William Bor, Alina Morawska, (2007). Maintenance of Treatment Gains: A comparison of enhanced, standard, and self-directed Triple P-Positive Parenting Program. *J. of Abnorm Child Psychol.*, 35, 983-998.
- Scott, K. & C. V. Crooks, (2007). Preliminary Evaluation of Intervention Program for Maltreating Fathers. *Brief Treatment and Crisis Intervention*, 7(3), 224-238.



토론

지정토론

국주영은
전북도의원

국주영은

전북도의원

- 이번 포럼을 기회로 정확한 실태조사와 피해아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그리고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람.
- 먼저 주제발표문의 연구필요성과 목적에 아동복지법과 정책의 연혁을 소개한다든지 아동학대의 영향을 소개하는 등 목차의 구성에 맞게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음.
 - 아동학대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제시된 내용은 대체로 공감하나 다만 앞장의 ‘아동학대의 현실’에서 제시된 데이터를 근거로 정책적 대응이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컨대 27쪽 학대행위자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부모가 81.8%를 차지하고 있고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33.1%를 차지하고 있는데 35-36쪽 아동학대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서 인식개선이나 부모교육과 각종 사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 결론 및 제언에서도 정책적 주요 사안으로 다루고 있지 않는 점 등 보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본 의원은 발제문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주요 핵심 사안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책대안을 제시함.
 - 2013년 칠곡, 울주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 아동학대 예방법이 시행되었음. 그러나 2014년 아동학대 예방법 시행 예산이 전무했던데 이어, 2015년에는 필요 예산 572억원 중 169억원만 편성됨(국회에서 83억 증액하여 최종 252억 편성).
 - 더욱이, 올해 아동학대 예산이 185억원으로 2015년 252억에서 67억(-26.5%)이나 삭감됨.
 - 이처럼 필수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은 것은 물론, 그 나머지의 예산마저 삭감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비극의 반복을 야기한 것임. 정부는 관련 예산을 포함하여 아동학대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정책대안을 내놓아야 함.
- 아동학대 사건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아동보호시스템을 강화해야 함.
 - 아동보호시스템 강화를 위해, ①학대 아동 조기 발견, ②학대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개입, ③피해 아동에 대한 충분한 치료·보호 제공, ④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함.
- 첫째, 학대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다니는 영유아와 아동이 특별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결석할 시 시설장이 해당 내용을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도록 해야 함.

- 또한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관계 시설장으로부터 결석 내용을 통보받은 경찰서에서 아동학대 전문가를 대동하고 해당 영유아 및 아동의 집을 방문하여 학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함.
 -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 현황을 1-2일 내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부-행정자치부-경찰청, 학교와 주민센터, 교육부-교육청-지원청-학교 간의 유기적인 정보공유체계를 마련해야 함.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학교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임.
- 둘째, 발견된 학대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해야 함. 학대사건 개입의 일선에 있는 기관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지만, 기관수가 전국 55개소(2016. 1. 5 현재)에 불과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개입이 어려움.
- 단기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00개소로 확충하고, 중장기적으로 모든 시군구마다 1개소씩 설치되도록 해야 함.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을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함.
- 셋째, 학대피해 아동은 충분한 치료와 보호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함. 이를 위해 피해 아동쉼터를 대폭 확충해야 함. 지난해 아동학대 피해자의 5.1%만이 부모로부터 격리 조치를 받았고, 74.4%는 가정 복귀 조치됨. 상당수의 피해 아동이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지는 이유가 아동쉼터가 부족하기 때문임.
- 현재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쉼터들의 총 수용 규모가 250여 명에 불과함. 이를 대폭 늘릴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넷째, 아동학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부모교육을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야 함. 즉 아이를 방임하고 때리는 것은 학대행위이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는 인권유린행위이자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현재 아동학대행위자에게 권고하도록 되어 있는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 등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함.
 - 끝으로 본 의원은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학습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부모 교육 또는 부모 학습과 관련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전라북도 아동학대 예방대책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도록 하겠음.



토론

지정토론

김광혁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광혁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아동학대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전라북도의 노력과 과제

1. 발표 내용에 기초한 실태 분석

1) '아동보호'에서 '가족서비스'로의 전환 필요

- 부모가 학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음
- 아동이 아닌, 가족이 정책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음.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 필요

-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는 지역의 높은 신고율

3) 신고의무자의 신고 확대

- 신고의무자의 역할 강화는 매우 의미가 있음.
- 그러나 그 내용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초중고교 직원의 높은 신고율)

4) 아동학대 가해자의 고위험군, 피해자의 고위험군 파악

- 사전적 예방서비스의 효과 예상

5) 분리보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 지역사회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연계 강화 필요

2. 특례법을 통한 아동보호 전달체계의 강화, 그러나 여전히 과제

1) '과정, 절차, 수단'의 강화'를 '궁극적 목적의 달성'으로 연결 짓기 위한 노력 필요

- ① 아동보호서비스의 과정 및 절차 영역을 강화한 특례법 제정 및 시행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학대 경험 아동의 치유를 완전히 보장하는 것은 아님.
- ② 이번 특례법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아동보호서비스의 공공화, 처벌의 강화, 강제력의 강화'로 요약할 수 있음. 이러한 공공화, 처벌의 강화, 강제력의 강화는 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치유라는 아동복지의 궁극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나 과정 영역의 강화라 할 수도 있음. 즉 목적 달성을 위한 과정 중심의 강화 및 발전이라 평가할 수 있음.
- ③ 목표 달성을 위한 우수한 과정 및 절차를 만든 노력 및 성과에 대한 의미부여와 이 과정들을 통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학대 경험 아동의 회복, 재학대 발생의 방지 등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아동복지계의 후속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필요함.

2) 궁극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과제와 논의

- ① 현실적 과제: 급증하는 신고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되는가?
 - 신고의무자 처벌 강화에 따른 면피용 신고의 증가
 - 저위험 사례에 대한 신고와 미신고에 따른 처벌의 딜레마?
(아동중심의 신고와 조사, 판단의 절차 및 과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 급증하는 신고를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졌는가?
 - 고위험, 저위험 사례에 대한 차등적인 대응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 및 예산 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 필요

- ② 아동학대의 사후적 개입 강화와 함께 예방적 개입의 실질적 강화가 요구됨
 - 특례법 제정 및 시행 이후, 최근 아동보호서비스의 주요한 변화는 사후적 개입이라 할 수 있는 아동학대의 3차적 예방서비스 영역에서 주요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아동보호서비스의 최선의 목표는 사전적 예방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노력이 병행 및 강화될 필요가 있음. 특히,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적 개입의 강화 필요.
 - 예방적 개입과 사후적 개입은 기존의 아동서비스 기관의 연계 및 역할분담으로 가능함.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2차적 예방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함.
 - 사후적 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내 아동 관련 기관 간 연계 체계강화 : 학대 노출 아동의 사후 관리(치료) 및 가족서비스(사례관리)가 강화되어야 함.
 -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 양육시설 및 치료 시설과 연계 체계의 구축 필요
- ③ 아동학대 예방서비스는 아동보호전문기관만의 책임 및 역할인가?
 - 특례법 제정 및 시행 이후, 아동복지서비스 내 아동보호서비스 영역의 변화나 역할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체이고, 나머지 아동복지 기관 및 시설은 객체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음.
 - ‘목표달성의 강화’를 위해서는 아동복지계 전반의 연계 및 협력 강화 등이 중요하며, 이는 아동복지계 전반의 과제이자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렇다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여타 아동복지기관의 역할분담은 ‘어떠한 과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모형 제시가 필요함
- ④ 조사-서비스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다른 아동서비스 기관 간의 연계 및 협력이 제한적인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음(다른 아동서비스 기관도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 장기적으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조사 및 판정과 서비스 기능의 분리 고려

3. 전라북도에 필요한 정책

1) 광역아동서비스센터 설립 필요

-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인한 비효율적 운영
- 기관 간 연계 강화 및 역할 분담 (아동, 가족, 여성 서비스의 유기적 결합)
- 예방 및 사후서비스 강화 (서비스의 유기적 결합 및 조정)
-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낙후 지역에 대한 직접 서비스 제공)
- 학교, 행정, 복지서비스 기관 간의 연계 강화

2) 아동보호전문기관 신설 및 담당 지역의 조정 필요

- 기존 기관의 업무 부담 증가(사례 수 증가, 치료 서비스 증가)
- 서남권 지역(군산, 고창, 부안), 동북권 지역(무주, 진안, 장수) 대한 서비스 강화

3) 부모 교육의 강화

-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부모의 아동관, 교육적 지원 등이 변화될 필요가 있음.
- 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예방적 개입의 시작



토론

지정토론

김완진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김완진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신영화 교수님의 '아동학대의 현실과 정책적 대응'이라는 발표를 통해 아동학대의 이해와 아동학대의 현황 그리고 피해아동에 관한 연구들과 아동학대에 대한 정책 대응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보니 현재를 점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토론자로서 현재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문제와 그 예방과 해결책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생각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해결과 예방에 대한 제 개인적 소견을 '아동학대 범죄 처벌들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제안해 보자 합니다. 특별히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이야기 하는 이유는 현재 아동학대를 접근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특례법이며, 실제적으로 특례법 적용 전후의 아동보호 현상이 변화와 사례의 형태가 매우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 특례법의 시행과 적용의 문제점과 법률 적용에서의 적극성 부족 부분

먼저, 2014년 9월부터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를 확대하고, 아동과 부모의 격리 규정 등을 담은 아동 학대 특례법이 시행되었고 이를 근거로 현장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사가 "(학대 의심 가정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조사하라"는 부분까지 명확하게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상 같은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특례법도 '친권'이라는 벽을 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를 살펴보면, "초동 조치 이후 부모에게 돌려보냈다가 2차 학대 피해를 본 아동이 2015년에만 700명 가까이 된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즉, 친권 존중과 아동 보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면서 특례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경찰이나 보호기관이 학대 사실을 입증하게 돼 있는 지금의 규정을, 자녀를 학대하지 않았다는 증명 의무를 부모에게 부과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이와 더불어 부모의 인식개선이 절실합니다.

최근의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일 보도되고 아동학대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지만 아직도 많은 부모님들이 아동학대 문제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이 개입할 경우 "내 아이를 말 잘 듣게 때리는 데(내 아이가 말을 잘 듣도록 때리는 데) 왜 경찰이 와서 개입하느냐고 부모가 항의하는 바람에 오랜 시간 설득으로 상담이 지연됩니다. 또한 개입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 당위성을 설명하고 심지어는 경찰관에 의한 물리력이 행해진 이후 비로소 아동에 대한 상담과 서비스가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즉, 현장에선 신체 등 눈에 보이는 명백한 학대 증거가 없으면 가해 부모와 승강이를 벌이다 결정적인 개입시기를 놓치는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자기 자식이 아니라도 '아동에 대한 신체 및 정서적 학대는 용인할 수 없다'는 인식이 형성됐기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내 아이를 내 방식대로, 내가 성장했던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키우겠다는 부모들의 인식이 아동학대 개입의 어려움이며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즉, 아이들의 부모가 아동보호 서비스를 거부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부모가 아동보호서비스를 거부하면 처벌에 앞서 서비스를 강제로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합니다.

▶ 재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5년 통계를 보면 전체 사례의 재학대율이 평균 10%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도내의 아동학대 사례 중에서도 재신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초 학대 발생 시 아동들과 부모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지고 잠시 부모와 분리시키지만 이후 부모의 아동 원가정 복귀에 대한 강력한 의견 제시와 민원제기 그리고 아동들의 부정적인 시설인식으로 원가정 보호 중심의 서비스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재학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최초 학대와 재학대에 대한 처벌이 별반 다른지 않은 게 허점이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 숨진 원영 군처럼 아동보호기관에 맡겨졌다가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지는 학대 피해 아동이 10명 중 7명이나 되는 결과를 토대로, 재학대에 대한 모니터링과 처벌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보호시설의 부족문제입니다.

최근 숨진 원영 군처럼 아동보호기관에 맡겨졌다가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지는 학대 피해 아동이 10명 중 7명이나 되며 이와 같은 아동들은 다시 학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보호시설이 부족해서 집으로 돌려보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격리보호를 하려고 해도 아이들을 당장 입소시킬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본격적으로 적용 되었던 2015년 전라북도에 접수 된 아동학대 사례는 1,328건이며 이 중 1,165건이 아동학대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일시보호 29건, 장기보호 86건 총 115건의 시설보호가 이루어졌습니다. 격리를 통한 아동의 보호는 전체 사례의 8.6% 정도의 비율입니다. 피해아동이 가해 부모와 분리 후 2~3개월 가량 머물면서 심리 치료를 받고 보호 받아야 하는데, 현재 학대피해아동보호쉼터는 전국에 46곳이며, 한 곳당 수용인원은 겨우 7명입니다. 원가정과 완전히 분리가 필요한 아동은 장기보호시설(보육원, 일반 쉼터 등)로 옮겨지는데, 지자체가 관리하는 장기보호시설은 학대 아동만 돌보는 게 아니어서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를 버거워 합니다.

전라북도의 아동복지 시설을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14)과 치료시설(1) 및 자립생활관(1) 개소 총 16개의 시설에 정원 900명으로, 현재 725명의 아동들이 보호 중이며 41개의 그룹홈(정원 277)에 213명의 아동들이 보호 중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동학대로 인하여 요보호 아동이 발생 할 경우 수급권 지정 문제와 수사 지원 문제 그리고 부모로부터의 강력한 항의와 저항, 거기에 학대 피해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여러 가지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시설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보호조치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대 피해 아동이 발생될 경우 일시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고 안정시키며 여러 가지 서비스를 계획할 수 있는 일시보호시설은 반드시 확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특례법의 적용에서의 적극성 부족 부분

▶ 또 다른 측면으로서의 법의 적용에 관한 측면입니다.

특례법 이후 법적으로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응급조치, 임시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 졌지만 앞에서 지적되었듯이 부모의 강력한 친권 행사와 사회적으로 부모의 친권이 법 보다 먼저 중시되는 현상, 그리고 현장 경찰의 아동학대가 여타의 강력 범죄(살인, 강도, 강간등)에 비해서 그 중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아동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이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련의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해봅니다.

2015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를 살펴보면 응급조치의 경우 906건으로 전체 사례의 7.7%가 이루어 졌고, 임시조치 1,100건으로 9.4%,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가 259건으로 2.2%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아동학대가 이슈화 되고 있으면서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했다고 하며, 학대아동을 적극 발굴하고 전담 검사와 경찰을 배치해 사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은 기존의 형사재판부 3곳을 '아동학대 전담부'로 지정했다고 밝혔으며, 법원 관계자는 "단독재판부, 합의재판부, 항소재판부 각 한 곳을 아동학대 사건만 전담하는 곳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전담 판사들이 아동학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기존보다 개선된 재판 진행이나 처벌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에 더불어 일선 현장 경찰관들 또한 아동학대 사례를 신고 접수 받고 현장에 출장하였을 경우 아동 안전 최우선 원칙에 근거하여 피해 아동보호를 위한 측면으로 응급조치, 임시조치, 피해아동 보호명령 등을 청구 하는 것을 적극적인 검토하고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와 더불어 정확한 아동학대의 개념 정립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됩니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신설될 때 '아동학대' 개념은 수정, 보완되지 않고 기존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정의를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 역시 과거의 형법이 정한 범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현장에선 신체 등 눈에 보이는 명백한 학대 증거가 없으면 가해 부모와 승강이를 벌이다 결정적인 개입시기를 놓치는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부모의 체벌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게다가 정서적 학대는 신체 학대보다 관대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동학대의 정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학대받은 아이, 사회가 보호합니다.

▶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현장에 출동해 아동을 보호하고 상담하며 치료하는 역할과 아동학대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다양한 원인들을 제거하고 원가정을 회복하는 역할이 중심입니다. 즉, 피해 아동의 학대 피해에 대한 개입과 서비스 제공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서비스를 종료하고 3개월의 추후관리 이후 사례 종결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 및 요구 사항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의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적 측면은 원가정 보호 중인 아동들에게는 한 번 개입 되었다면 아동이 만 18세를 지나 성인에 이르기 전 단계까지의 사례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리 보호 되어 시설 보호 중인 아동들은 시설 보호과정에서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원가정과의 소통을 아동 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56곳에 불과하고, 소속 상담원은 522명으로 상담원 1명이 아동 1만8000명을 담당하는 꼴입니다. 최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업무량 조사 자료를 보면 아동학대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전인 2013년 상담원 1인당 현장조사 평균은 131.2회이며, 2014년 상담원 1인당 현장조사 회수는 168.2회로 28.2% 상승했으며 특례법이 본격적으로 적용 된 2015년의 경우 상담원 1인당 271회 평균 106.6%의 업무량 상승치를 볼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보면 2013년 상담원 1인당 1,382.1회에서 2014년 1,341.6회로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이 특례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는 2015년 2,930.4회로 112%의 상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량의 경우 신고접수가 2013년 13,071건, 2014년 17,773건으로 전년 대비 36% 상승 되었으며 2015년 19,200건으로 전년대비 46.9% 상승한 수치이며, 현장조사의 경우 2013년 42,638회, 2014년에 61,242건(43.6%), 2015년 70,732건으로 65.9% 상승했으며, 서비스 제공의 경우 2013년 449,172회, 2014년 488,326회(8.7%), 2015년 764,834회 70.3% 상승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담원들은 현재 접수 중인 사례에 대한 개입 뿐 만 아니라 한 번 담당자로 지정되면 그 기관에 근무하는 동안은 종결 없는 사례 관리의 책임을 요청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가정과 지역사회의 학대 피해 아동과 관련된 여러 체계들로부터 지속적인 아동보호 책임이라는 역할 수행의 부담은 상담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소진과 갈등 그로 인한 이직과 사직을 고민하고 다른 부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상담원의 전문성을 축적하고 확립하는데 방해 요인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역할 정립이 구체적으로 요구 됩니다. 아동학대가 신고 접수된 이후 아동의 상담, 보호, 치료의 과정을 거치고 어느 정도 학대 상황에서 아동이 안전하다 판단되면 종결을 진행하고 3개월의 사후관리를 통해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1차적 종결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례관리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하여 사례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 주체가 드림스타트가 될 수 있고

희망복지지원단이 될 수도 있으며 지역사회 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 일련의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이후 여러 지자체 등이 ‘아동학대 대응체계 관련 네트워크 구축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좀 더 촘촘한 안전망 구축, 특히 사례관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신고의무자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15일 공개한 ‘2015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속보치)’에서 지난해 아동학대 사례는 1만1709건으로 2014년 1만272건보다 16.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같은 기간 14명에서 1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 교직원·의료인 등 24개 신고의무 직군이 신고한 경우는 29.3%(4885건)에 그쳤고, 나머지는 이웃·친구, 친·인척 등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일보(2016.1.29.) 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의료인, 교사, 학원강사 등 24개 직군, 전국 160만 명 규모지만, “학대 예방교육을 받은 인원은 19%인 30만 명(2014년) 뿐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일본 68%, 미국 60%)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실태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아동은 취학연령인 만 7~15세가 전체 피해아동의 60.1%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피해자 중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의 비중이 높은 것은 교사를 포함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상대적으로 아동의 건강이나 위생 상태를 면밀히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발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아동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우리가 조금 민감했었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의무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이 신고를 통하여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신고의무자에 대한 규정을 좀 더 강화하고 신고의무를 다할 수 있는 제도적 방치를 빠른 시간에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신고의무자 교육과 관련해 현행법은 ‘지자체는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로 돼 있는 등 강제성이 없는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교육부는 “초·중·고교에서 행정자치부의 주민전산망을 활용해 미취학·장기결석 아동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는 방안이 시행된다.”고 발표하면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학교장이 행정정보망에 접속해 아동의 인적사항인 주소, 연락처, 출입국 관리기록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는데 이에 덧붙여 아동학대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구체적 행동 강령이 보완 되어 져야 합니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 내에서 발견된 아동학대 사례를 신고하고 대응하는 부분과 학대 피해 아동의 사례관리적 측면이나 상담원의 피해 아동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부분에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 될 경우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학교장이 행정정보망에 접속해 아동의 인적사항인 주소, 연락처, 출입국관리기록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오히려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부분에 있어서 역효과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이므로 발견 이후 개입 절차나 개입 방향에 대한 정확한 행동 지침이 보완되기를 기대 합니다.

▶ 신고의무자 보호법이 필요합니다.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규정을 강제화 함에 있어서 반드시 따라가야 할 것은 신고자에 대한 신변 보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신고의무자들이 아동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기를 어려워하는 공통점으로 신고 이후의 신고자의 신변이 보장되지 않고 가해자로부터 협박, 폭언, 기타 신변의 위협을 받는 부분이나 조직 내에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나타나는 신변상의 불이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으로는 신고 이후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증인 등으로 출석함으로써 본인의 신분이 노출됨으로 파생되는 다양한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의무자 보호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토론

지정토론

임광묵

전남중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임광목

전남중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전라남도 아동학대 현황과 아동보호체계 개선방안

2014. 09. 29. 개정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아동학대 사건의 사법체계 내 사건처리 등 아동학대 개입의 공적인 절차가 강화되는 체제로서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국가의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표명하였으나 아동보호서비스 최 일선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제도 및 법의 현실적인 시행을 위한 예산 및 인프라, 사례 관리에 대한 대책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다. 물론 특례법이 시행된 지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고 이제 걸음마를 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근 계속해서 발견되는 참혹한 아동학대 사건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우리 사회가 아동보호현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부족함이 있는지 지속해서 점검하고 논의함으로써 부족한 점이 있다면 시급히 정책보완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더는 안타깝게 희생되는 아동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생각이다.

현재 상황에서 아동보호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과 경찰조직의 아동학대 민감성 수준 향상, 치료적 개입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양적 확대와 상담원 수 확대, 아동학대 예방강화와 조기발견체계구축, 지자체의 책무 강화, 아동복지예산확대라는 발제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이 의견에 대한 실천현장의 상황과 전라남도에서는 현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공유하고자 한다.

I. 전라남도 아동학대 현황

1. 아동현황 및 아동학대 연도별 현황

전라남도의 만 18세 미만 아동 수는 2014년 말 기준 전국 아동 수 대비 3.55%인 326,307명으로, 전라남도 인구수 대비 1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저 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최근 4년간 아동 수 변화추이를 통해 보면 매년 아동 수 감소폭이 전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1> 연도별 아동인구 및 아동 수 변동현황

<단위: 명,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아동 수	전국	9,921,012	9,691,876	9,431,699	9,186,841
	전남	359,112	348,993	337,216	326,307
	비율	3.62	3.60	3.57	3.55
변동현황	전국	-	△239,136 (△2.4)	△260,177 (△2.7)	△244,858 (△2.6)
	전남	-	△10,119 (△2.8)	△11,777 (△2.4)	△10,909 (△3.2)

※ 기준일(매년 12.31) 주민등록인구통계(행정자치부)

이렇듯 감소하고 있는 아동 인구와는 반대로 오히려 아동학대는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의 전라남도 아동학대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매년 평균 22%의 신고증가율을 보이며, 학대판정 또한 매년 평균 29%의 증가율을 보인다. 전국신고건 수 대비 전라남도 신고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기준 5.4%이며 학대판정 비율은 6.6%이다. 이렇듯 급증하는 아동학대 신고 속에서는 현재의 인력과 예산으로는 충분한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접근성에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2> 아동학대 연도별 현황 <단위: 건, 개>

구분		'11	'12	'13	'14	'15
전국	신고	10,146	10,943	13,076	17,789	19,208
	학대판정	6,058	6,403	6,796	9,823	11,514
	아동보호 전문기관	44	46	51	51	56
전라남도	신고	480(4.7%)	553(5.1%)	641(4.9%)	928(5.2%)	1,052(5.4%)
	학대판정	298(4.9%)	354(5.5%)	372(5.5%)	638(6.5%)	758(6.6%)
	아동보호 전문기관	2(4.5%)	3(6.5%)	3(5.9%)	3(5.9%)	3(5.4%)

※ 기준일(매년 12.31) 주민등록인구통계(행정자치부)

II. 아동학대 보호체계 개선방안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양적 확대와 상담원 수 확대

전라남도는 3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 중에 있으며, 1개소 평균 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 중 관장 및 심리치료 인력, 사무원을 제외하면 실제 아동보호서비스 현장에서 현장조사 업무와 사례관리업무를 진행하는 상담원은 평균 9명이며, 1개소 평균 아동 10만 8천여 명, 상담원 1인당으로는 약 12만여 명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9명의 상담원이 평균 7개 시·군의 광범위한 지역의 아동학대 사례에 개입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일례로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8개의 시·군을 관할하고 있으며 이 중 4개의 관할지역 각각의 면적이 인근의 광주광역시보다 넓고 나머지 4개 군의 각각의 면적도 광주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또한 신안, 진도, 완도 등 섬을 포함한 관할지역이 있어 현장조사 및 사례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인원 구성으로는 급증하고 있는 신고에 대한 현장조사업무조차도 버거운 것이 현실이며 아동학대에 대한 활발한 예방활동과 적극적인 사례관리업무는 엄두도 내기 힘들다. 상담원 1인당 담당 사례관리 수가 전국 평균 66.5건인데 평균 7개 시·군의 관할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수의 사례를 효과적으로 개입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충분한 서비스 제공과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급히 아동보호전문기관 수를 늘리고 인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2. 법원과 경찰조직의 아동학대 민감성 수준 향상

아동학대처벌법에 새롭게 제정된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 시 경찰동행과 아동에 대한 응급 조치 및 임시조치 등의 절차가 포함되었고 행위자 처벌에 있어 경찰과 검찰의 법원의 역할이

한층 강화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처벌법이 현장에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과 검찰, 법원의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져서 적극적으로 법을 현장에 적용 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전라남도의 경우 특례법 시행을 전후하여 경찰, 검찰, 법원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관계기관들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이 지속해서 이루어졌다. 전라남도 차원에서의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 경찰서 및 지방경찰청 차원에서의 아동학대 관련 인식개선교육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진행하였으며, 간담회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관점 차이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검찰 또한 간담회 및 워크숍 진행을 통해 관계 기관과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가정법원 또한 마찬가지로 간담회 진행을 통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모든 기관이 소통의 노력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 수준을 향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다. 우선 사법기관 종사자들의 순환보직으로 인한 인사이동이 잦아 반복적인 교육과 소통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관계기관들과의 소통과 더불어 사법기관별 자체 교육이 지금보다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으며 아동학대 업무에 대한 철저한 인수인계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아동학대 행위자와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치료적 개입강화

특례법 시행 이후에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등이 증가하고 있어,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치료가 강화되고, 학대 아동을 치료할 수 있는 학대 피해 아동 전용쉼터 등도 크게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전라남도에는 5개소의 학대피해 아동 전용쉼터가 운영 중이나 22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아동들을 보호하고 치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주하는 임상치료사의 경우 늘어나고 있는 학대행위자 수탁 프로그램 진행만으로도 업무가 가중되고 있으며 군 단위 지역이 많은 전라남도에서는 지역 내 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이 많아 치료프로그램을 연계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에 전라남도에서는 3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별로 임상심리사 1명을 전액 도비 지원을 통해 배치하여 양육시설 보호 아동 및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검사 및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각 아동보호전문기관별로 프리랜서 심리치료사를 통한 찾아가는 심리치료를 활성화하여 서비스 제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 아동학대예방강화와 조기발견체계구축

전라남도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과 홍보강화를 위해 신고의무자 직군의 집합교육을 활성화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도비 1천5백만 원을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비용으로 별도 책정하여 유관기관들과의 연대를 통한 공동 아동학대예방 사업을 매년 시행해오고 있다. 또한 전라남도의 경우 2007년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전남도의 책무를 규정하고 아동학대예방사업 추진, 아동학대 발견, 신고, 홍보, 치료의뢰 등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아동학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자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Ⅲ. 앞으로의 과제

아동학대는 정부만의 또는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과 책임을 지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정부는 아동학대 방지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예산지원을 늘리고, 현실적인 수준의 인프라 확충을 시급히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자체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확대하고,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사법기관 또한 특례법이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례법 시행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적 개입이 강화되고 아동보호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현재의 특례법 체계 내에서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사후 책임 뿐이므로 사법적 개입을 통해 아동학대를 해결하려는 노력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처벌, 훈육을 정당화하고 폭력에 너무 관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해 국민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전라남도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 회의자료 (2016. 03)

아동양육과 부모인식개선 대토론회 (2016.03)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체계 개선방안 (2015.04) 굿네이버스 아동정책 포럼



토론

지정토론

황경완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 과장

황경완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
과장

전라북도 아동학대 예방 대책

I. 기본현황

- 아동인구 : 326,202명(도 인구 1,869,711명의 17.4%, 2015년말 기준)
- 아동복지시설 : 342개소(양육14, 보호치료1, 자립1, 그룹홈41, 지역아동센터285)
- 아동보호전문기관 : 3개소(전주 1, 익산 1, 남원 1)
- 학대피해아동쉼터 : 3개소(전주 1, 익산 1, 남원 1)
- 아동학대예방 관련 사업비 : 1,919백만원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 1,530백만원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 379백만원
 - 기타 아동학대예방사업비 : 10백만원

II. 우리도 아동학대 현황

- 피해대아동연령 : 유치원생 30%, 초등학교 40%, 중고생 30%
- 학대발생장소 : 가정 80%, 교육기관 5%, 복지시설 5%, 기타 10%
- 가해자 유형 : 부모80%, 친인척 7%, 시설종사자 5% 기타 8%
- 신고 및 조치결과

구분	신고건수			학대사례						피해아동 조치결과				
	건수	현장 조사	일반 상담	건수	신체적	정서적	성적	방임	중복(학대대상)	건수	원기정	친인척	일시 장기	입원등
2014년	1,435	1,302	133	925	78	157	39	218	433	925	650	95	175	5
2015년	1,328	1,166	162	883	65	187	47	209	375	883	665	93	119	6

구분	학대행위자						학대행위자 조치결과				
	건수	부모	조부모	친인척	시설종사자(본역포함)	기타	건수	지속관찰	아동과의 분리	고소 고발	기타
2014년	925	782	37	37	20	49	925	744	34	93	54
2015년	883	719	27	34	43	60	883	675	39	138	31

III. 비전 및 중점추진과제

비전	아동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전라북도
----	----------------------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치료 강화로 건강한 성장환경 지원 □ 학대행위자, 가족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통해 학대 재발 방
----	---



추진과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운영
	학대피해아동 보호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보호전문기관 부설 일시쉼터 확충 및 기능강화 □ 학대피해아동 격리보호 시 가정위탁 우선 보호 □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시설보호 지원 □ 사후관리 강화로 학대지역으로부터 회복지원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대상 아동학대예방교육(성학대예방, 아동권리교육 등)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일반성인 대상 아동학대예방교육 □ 아동학대예방 홍보사업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운영 □ 유관기관간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한 협력체계 강화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IV. 추진대책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 미취학, 초등, 중등 장기결석아동 교육청과 합동조사 : 수시
 - 건강검진·예방접종 미실시 아동 전수조사 : 3월말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여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사례관리 등 실무적인 협력방안 모색

3.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 강화로 학대지역으로부터 회복지원
 - 학대피해아동 특성에 맞는 심리치료서비스 제공
 -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 제공, 공적지원 및 지역사회서비스기관 연결

4.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 신고의무자 직업 종사자에 대한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
 - 부서별 자체 교육계획 수립 '16년 상반기 중 교육 실시
 - 가정위탁지원센터(1개소) : 여성청소년과
 - 아동복지시설(340개소) : 여성청소년과
 -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전담공무원(1,095명) : 사회복지과
 - 가정폭력·성폭력 관련시설(31개소) : 여성청소년과
 - 건강가정지원센터(6개소) : 여성청소년과
 - 어린이집(1,623개소) : 사회복지과
 - 장애인복지시설 (178개소) : 노인장애인과
 - 청소년시설(54개소) : 여성청소년과
 - 한부모가족 관련 복지시설(7개소) : 여성청소년과
 - 아이돌봄지원센터(15개소) : 여성청소년과
 - 다문화지원센터(14개소) : 국제협력과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직군 : 보건의료과, 건강안전과
 - 소방서 119 구급대원(2,000명) : 방호구조과
 - ※ 교육기관 종사자 : 교육청에서 별도 추진
- 최일선에서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읍면동 담당자(260명)를 대상으로 특별교육 실시 : '16. 4월
- 주민교육 및 홍보 등 인식개선 활동 강화
 - 공익신고 방법 및 포상금 지급제도에 대한 홍보 리플릿 제작 배부
 -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해 신고활성화
 - 도 및 시군의 홍보전광판을 활용 포상금제에 대해 홍보

5.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 전라북도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운영 : 4월중
 - 복지여성보건국장(위원장), 도의원, 교육청, 전북경찰청
법조계, 의료계, 아동보호전문기관장, 학계 등 15명 이내 구성
- 실무위원회 설치·운영 : 4월중
 - 도 출산아동팀장, 교육청, 경찰청, 전주시·익산시·남원시 팀장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전북본부,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6.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소관부서별 시설종사에 대한 아동학대예방교육 이행 독려 및 미 이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등 지도감독 강화
- 아동학대 발생 시설에 대한 형사고발 및 시설의 운영정지·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 적용
- 시·군 드림스타트를 활용 아동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